

HPA'가 퍼 다 센놈이 온다

‘허가요건 강화’ 축산법 시행령 개정 논란

클심는 순서

Part I 축산법 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

Part II 오리산업에 미칠 파장은?

Part III 축산업계 및 오리업계의 입장은?

가설건축물 불허 오리업계 맨붕 기존농가도 적용 오리농가 76%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 형태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설건축물 등 축산업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가설건축물은 신규농가는 물론 기존 오리농가들도 5년 이내에 일반건축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오리업계에 미칠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오리농가의 76%가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 형태로 대부분의 오리농가들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오리농장이나 오리농장의 사육시설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제 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 같은 기준은 신규농가는 물론 기존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들도 5년 이내에 같은 시설을 갖춰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을 놓고 관련단체 등에 의견조회가 이뤄졌으며 오리협회는 물론 축산관련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와 한국오리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축산업 허가요건을 강화하면서 돼지·가금 사육농가들의 사육시설에 대해 무조건 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받은 일반 건축물만 인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신규 농가는 물론 기존 허가자도 소급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라며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로 사육시설로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무슨 권위로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으로 건축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건축물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면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신청을 접수해 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part I

축산법 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이유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축산분야 약취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농장단위 방역 및 환경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기존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중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시설, 약취저감 장비·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이 지적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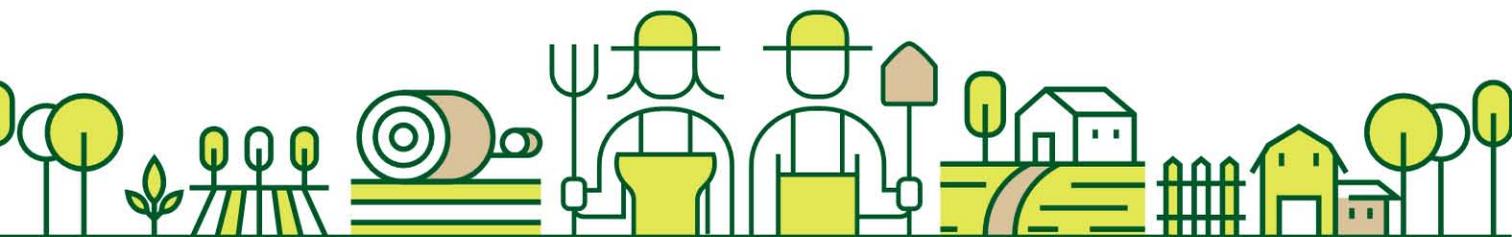
가설건축물 불허

종오리업이나 오리사육업에 대한 축산업 허가 요건이 강화된다.

가장 먼저 건축법 제 11조 또는 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는 신규농가는 물론 기존 오리사육업으로 허가를 받는 농가들도 해당된다. 다만 기존 농가의 경우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내 똑 같은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이는 비닐하우스형 축사 등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분동에 필요한 밀폐형 통로 확보해야

오리농가들은 새끼오리를 입식해 키우는 과정에서 성장 단계에 따라 분동을 해야한다. 때문에 분동시 오리의 축사간 이동이 불가피하다.

개정안에서는 분동하는 과정에서 오리의 이동통로를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사육시설 간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농가는 물론 기존 농가들도 이 같은 시설이나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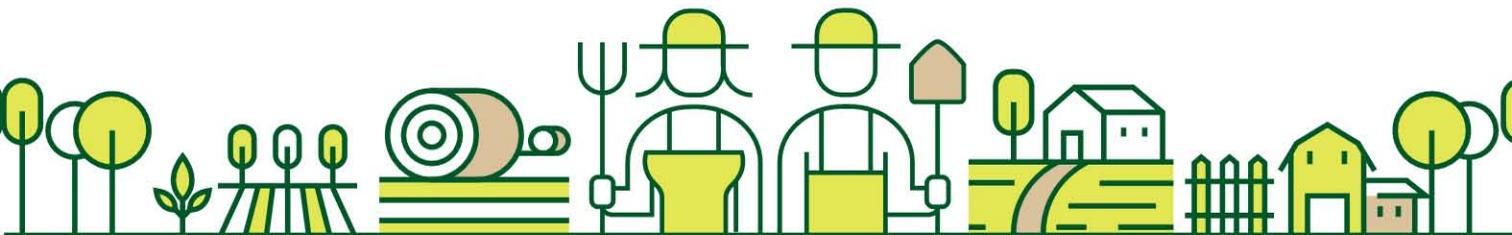
3

깔짚 보관 시설 확보해야

종오리농장은 물론 오리농장들은 왕겨 등 깔짚을 사육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깔짚보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깔짚보관시설은 쥐·새 등 야생동물이 내부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여야만하고 환기구 등에는 차단망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농가와 기존농가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농가들도 깔짚보관시설을 신규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part II

오리산업에 미칠 파장은?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종은 다름아닌 오리농가들이다. 왜냐하면 오리농가 76%가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 형태의 축사에서 오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오리협회에서 2019년 실시한 오리사육시설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축사 형태가 주로 비닐하우스형(76.3%)으로 나타났다. 이어 샌드위치 판넬형 14.1%, 트러스형 8.8%로 이뤄져 있다. 무엇보다 기존 농가들의 경우 가설건축물로 허가받은 축사를 허물고 건축법에 따라 신축해야만 하는데 소득 구조상 투자여력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조사에 따르면 오리농가들의 절반 가까운 48.4%가 연간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농가들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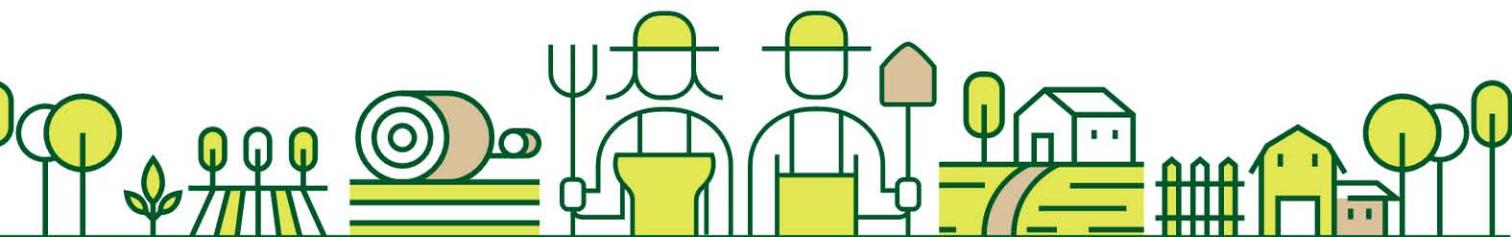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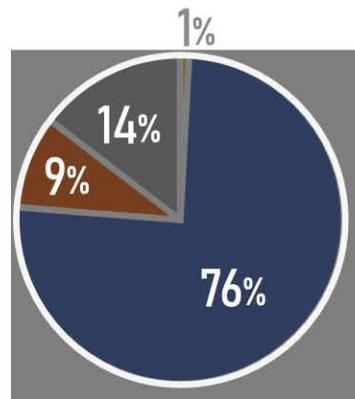
특히 오리농가들이 평균 부채는 1억8천여만원으로 축사 신축을 위해서는 부채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은 과거에 비해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로 오리농가들은 난감한 실정이다. HPAI로 인해 울인울아웃 제도가 시행되면서 연간 회전율이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오리사육휴지기제로 인해 2~3개월은 평균 소득이 80%로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축사 신축을 위해서는 새롭게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데 농장 여건상 신축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1

오리농가 축사 형태

축사 형태는 주로 비닐하우스 형태(76.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샌드위치 판넬형(14.1%)과 트러스형(8.8%)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비닐하우스형 ■ 트러스형 ■ 샌드위치판넬형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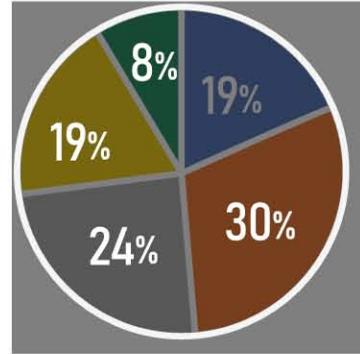


2

축사 재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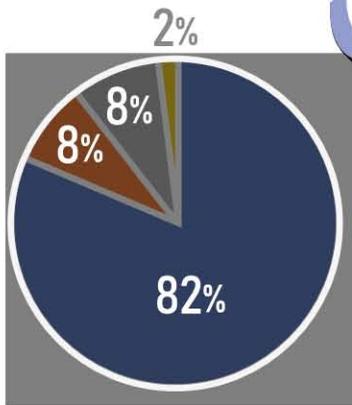
축사 구조체의 재질은 파이프가 81.5%로 가장 많았으며 H빔 8.2%, 경량철골 8.2%, 기타 2.1% 순으로 이었다.

- 5,000만원 미만 ■ 5,000만~8,000만원 미만
- 8,000만~1억 2,000만원 미만 ■ 1억 2,000만~2억 원 미만
- 2억 원 이상



3

소득현황



우리 사육농가의 연간 총 소득은 8,000만~1억 원 미만이 29.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억~1억 5,000만원 미만이 2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억 원 이상인 농가 비중은 8.5%에 불과하며, 연간 평균 총 소득은 1억 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8천만원 이하의 농가 비중은 48.4%로 생계형이 절반 가깝기 때문에 신규 투자 여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파이프 ■ H-beam ■ 경량철골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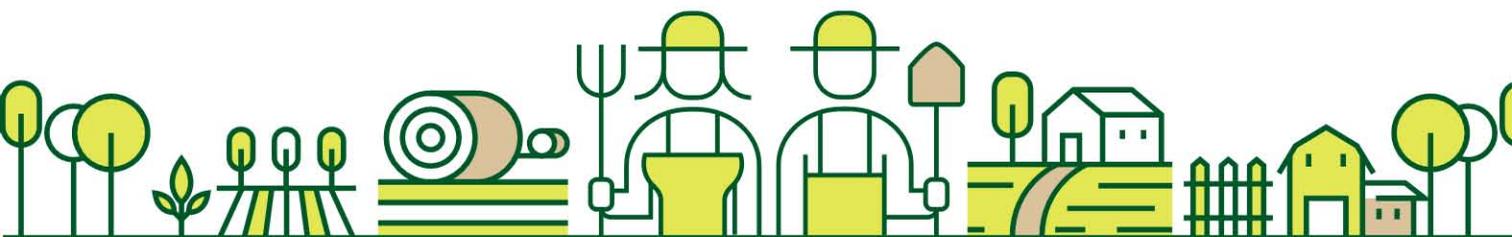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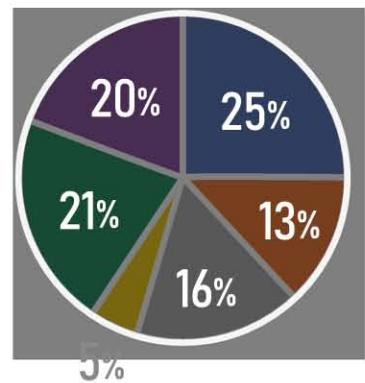
4

부채현황

우리 사육농가 중 금융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59.5%인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원 미만 25.2%, 2억 원~5억 원 미만 16.2%, 1억 원~2억 원 미만 13.1%, 5억 원 이상 5.0%의 순이었다.

농가당 평균 금융부채는 1억 7,900만원이었다.

- 1억 원 미만 ■ 1억~2억 원 미만
- 2억~5억 원 미만 ■ 5억 원 이상
- 없음 ■ 무응답



part III

축산업계 및 오리업계의 입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설건축물은 축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축산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한국오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축사, 가축분뇨처리, 운동장, 비가림용으로 사용을 허용한 가설건축물을 건축법 소관부처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신규 허가자뿐만 아니라 기존 허가를 획득한 농가에 대해서도 5년 내 일반건축물로 전환하라는 유례없는 소급적용을 명하고 있으며, 오리축종에 한해 초생추 분동통로와 왕겨창고를 구비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대로라면 해당 시설들은 5년 내에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어려운 농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른

한국오리협회

입장

한국오리협회는 신규 허가대상 농가뿐만 아니라 기존 농가의 축사에 대한 건축법상 허가 의무화는 현재 각종 환경관련법령 및 지역 조례 등에 따라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사례가 상당수인 상황에서 오리산업의 존폐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오리의 경우 2019년 기준 전국 오리농가 911호 중 76.3%인 695호가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 축사이므로 기존 축사의 건축허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보조사업 등 추진방향이 완료된 이후 검토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진행하였던 축사시설현대화사업(보조)의 경우에도 오리 축종의 경우 거의 혜택을 받지 못했었고(전체 대상의 3%) 보조사업을 통해 축사시설을 현대화한 오리 농가들 대부분이 닭 축종으로 전환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오리 축종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축사시설현대화를 추진하더라도 오리농장의 경우 육계농장에 비해 평당 사육마릿수 및 농가소득이 월등하게 낮으므로 투자비용 회수기간을 약 10년으로 고려하였을 때 60~70% 수준의 정부 보조가 필수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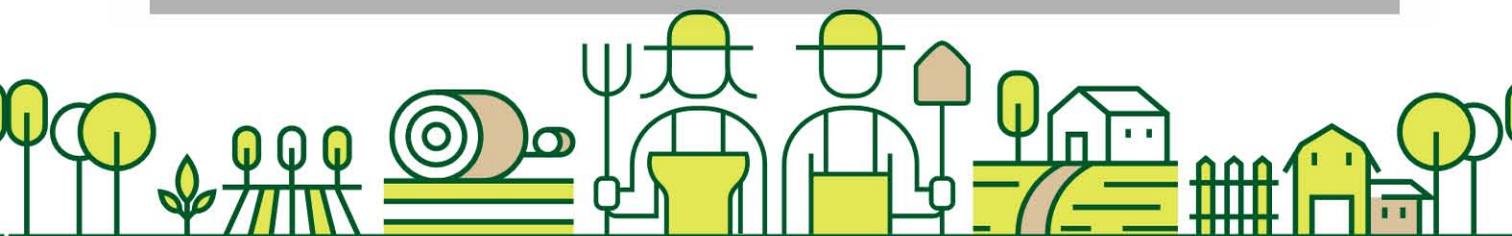
축산업계 입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축산법령 일부개정령안은 축산업 허가요건을 강화하면서, 종축업(한돈, 닭, 오리) 및 가축사육업(한돈, 닭, 오리)시설에 대해 무조건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 뿐 아니라 기존 허가자도 소급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회의, 언질 및 의견수렴 절차 없이 서면으로 의견조회를 하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의견조회와 관련하여 반대의견(일부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금번과 같은 자칫 법령개정의 요식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행정은 지양해주시고, 이해관계자인 축산단체와의 사전 적극적인 소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업 ★
허가요건 강화

(가설건축물 허가 제외)

축산농가는 축산법 제22조의 축산업 허가요건에 적합하여,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건축법의 허가요건과 관련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대책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도 가축을 사육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건축법 인용·의제 규정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및 행정기본법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저촉되는 위법·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는바, 동 건축법 인용·의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가 추진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의 핵심인 '가설건축물을 통한 적법화' 대책을 전면 거부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으로 불과 3년 전에 인허가를 마친 가설건축물 축사를 전면 철거하라는 것은 신뢰성의 원칙을 벗어난 강압적 규제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
분동시 필요한
통로 확보

오리 분동을 위한 시설이 아닌 장비를 구비하는 조건으로 조정해야 한다.
기존 축사에 오리 분동을 위한 시설(분동통로)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최근 HPAI 발생에 따른 방역정책국의 방역조치 사항의 경우에도 오리를 분동하는 통로에 대한 소독 및 비닐 등을 도포하고 분동통로 장비를 소독하도록 조치 중에 있기 때문이다.
지붕이 있는 형태의 분동통로는 건폐율상의 문제로 건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동 통로로 인해 전체 축사를 한 개 축사로 보아 소방법상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왕겨창고 팔짱
보관시설 구비

왕겨창고 구비의 경우에도 신규 허가시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왕겨창고 신축시 건폐율 등의 문제로 왕겨창고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왕겨창고에 대한 건축허가 조건은 삭제(가설건축물 창고 허용) 필요하다.

